



제429회국회(정기회)
제8차 국방위원회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관학교 설치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

■ 이견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356호)

■ 이견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357호)

2025. 11.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 수 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연번	의안번호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자	회부일자
1	221335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2025-09-29	2025-09-30
2	2213357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등 11인	2025-09-29	2025-09-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한민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고, 현행법은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미래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과 관련하여 그 정통성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고, 장교로서 요구되는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및 헌법적 역할 수행을 위한 가치관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육군3사관학교 설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및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게 하고,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 등의 함양을 추가하여 육군의 장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2.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고, 현행법은 각 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해군·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미래의 정규 장교가 될 사관생도에게 필요한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과 관련하여 그 정통성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고, 장교로서 요구되는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및 헌법적 역할 수행을 위한 가치관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사관학교 설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및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게 하고,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 등의 함양을 추가하여 장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들은 사관학교 설치의 목적이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및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게 하고,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 등의 함양에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한 것임을 명시하려는 것임(각 개정안 제1조).

[신·구조문대비표]

구분	현행	개정안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조(설치)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u>필요한</u>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둔다.	제1조(설치) ----- ----- <u>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및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게 하고, 육군의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 등의 함양에 필요한</u> -----.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조(사관학교의 설치) ① 육군·해군·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u>필요한</u>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해군·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둔다.	제1조(사관학교의 설치) ① ----- ----- <u>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및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게 하고,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 등의 함양에 필요한</u> ----- -----.

□ 「대한민국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를 명시하고 있음.

또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5조는 다음과 같이 국군의 강령을 규정하고 있음.

[국군의 강령]

제5조(국군의 강령) ①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②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③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

또한, 국방부훈령인 부대관리훈령 제16조제3호에서 장교의 책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장교는 군대의 기간이다. 그러므로 장교는 그 책임의 중대함을 자각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건전한 인격의 도야와 심신의 수련에 힘쓸 것이며, 처사를 공명정대히 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솔선수범함으로써 부하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 역경에 처

하여서도 올바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는 통찰력과 권위를 갖추어야 한다.

□ 한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국군은 독립군-한국광복군(이하 “광복군”이라 함)으로 이어 오는 정통성을 갖고 있는 국민의 군대임을 기술하고 있음¹⁾.

□ 이에 개정안은 사관학교의 설치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사관후보생들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과 국군의 정통성에 대한 교육을 하고, 향후 장교로서 양성되어 군복을 입은 민주시민의 일원으로서 전문성과 건전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추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사관학교 등의 학칙 중 교육목표 및 방침에서도 개정안의 목적과 유사한 취지를 명시하고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관학교 학칙의 교육목표 및 교과과정 등]

「육군사관학교 학칙」 제 3 조 (교육목표)

- ① 본교의 교육목표는 사관생도로 하여금 장차 아래의 소양을 함양하는데 있다.
1. 자유 민주주의 정신에 기초한 국가관 확립
 2. 위국헌신의 군인정신과 리더십 함양
 3. 첨단 군사 전문지식 습득 및 활용능력 배양
 4. 창의적·통합적 문제해결 능력 배양

1)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5. 강인한 정신력과 체력 연마

제 15 조 (교과과정)

- ① 교과과정은 학위교육과정과 군사훈련과정으로 나눈다.
- ② 학위교육과정은 군사학, 인문학, 사회과학, 이학, 공학, 체육학 분야를 포함한다.
- ③ 군사훈련과정은 별도로 정한다.
- ④ 복수전공제 또는 부전공제를 실시할 수 있다.

「해군사관학교 학칙」 제3조(교육목표 및 방침)

- ① 본교의 교육목표는 전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 1. 충성심, 명예심, 희생정신이 충만한 군인정신과 리더십 함양
 - 2. 장교로서의 직무수행, 학사학위 취득을 위한 전문지식 습득
 - 3. 불굴의 투지 함양을 위한 강인한 체력 연마
 - 4.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고도의 민주시민의식 고취

「공군사관학교 학칙」 제3조 (교육목표)

- ① 본교 교육은 다음 각 호를 목표로 한다.
 - 공군사관학교 졸업생들은,
 - 1. 인간존엄에 대한 존중, 정직과 성실, 도덕적 용기를 갖추어 신뢰를 얻고 명예롭게 산다.
 - 2. 학술적, 군사적, 체력적 역량과 포기하지 않는 근성을 갖춘다.
 - 3. 부하를 교육하고 영감을 불어넣어 도전적 임무를 완수하도록 이끌며, 극한의 상황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한다.
 - 4.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며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발휘한다.
 - 5. 명확하고 논리적인 의사소통과 효과적인 상호작용으로 팀워크를 발휘한다.
 - 6. 과학적인 추론능력과 공학적인 적용능력을 갖추어 공군무기체계 및 항공우주력 건설과 운용을 선도한다.
 - 7. 인간사회의 다양성과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적응하며, 적절한 상호작용을 한다.
 - 8. 국제사회의 정치·경제·군사적 환경에서 국가안보를 이해하고 안보전문가로서 헌신한다.
 - 9. 끊임없이 배우는 태도로 일생에 걸쳐 성장함으로써, 공군과 군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각 분야에서 탁월한 리더로 헌신한다.
 - 10.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불굴의 의지와 필승의 신념을 갖춘다.

□ 국방부는 「사관학교 설치법」 등이 사관학교 설치·운영의 기본방침을 정하고, 교과과정의 구체적인 교육목표와 내용은 각 군 사관학교 학칙으로 정하고 있고,²⁾ 장교로서의 전문성, 민주시민으로서 가치관 외에도 장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이 다양하며, 장교에게 필요한 모든 소양을 법조항에 기술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소요가 큰 법령보다는 학칙으로 교육목적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임.

2) 참고자료 2. 사관학교 학칙의 교육목표 및 교과과정 등 참조.

국방부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바, 헌법과 민주시민 교육 등을 각 군 사관학교 교과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학칙, 교과과정 개정 등을 추진 중임.

[관계 법령 규정]

「고등교육법」 제 19 조 (학교의 조직)	
①	학교는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②	학교의 조직에 관한 기본적 사항은 국립학교는 대통령령과 학칙으로 정하고, 공립학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학칙으로 정하며, 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과 학칙으로 정한다.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 12 조 (학과·전공 및 교과)	
과학기술원의 각 과정의 학과·전공 및 교과목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 상황을 고려하여 학칙으로 정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 제 36 조 (학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위과정, 교원, 학생의 관리, 그 밖에 한국에너지공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 참고로, 김문수의원이 대표발의한 3건의 사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은³⁾ 사관학교 교과과정의 규정을 개정하여⁴⁾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합리적 사고능력 및 건전한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하는 것임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

3) 의안번호 2209102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107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209108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교과) ① (생략)	제4조(교과) ① (현행과 같음)
② 교과과정은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	② -----하고,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의 합리적 사고능력 및 건전한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개정안은 제5조제2항 개정임.

문 의 처
02)6788-5304